

#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39,265,755	46,177,973
일반회계	1,352,511,110	40,575,333
특별회계	186,754,645	5,602,639
공기업특별회계	166,535,280	4,996,05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9,669,218	1,490,07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900,471	1,467,01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7,965,591	2,038,968
기타특별회계	20,219,365	606,5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0,781	12,32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537,245	226,11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166,780	125,003
수질개선특별회계	7,510,595	225,3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93,964	17,81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234,95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1,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